

비금융자산 추계에 관한
켄베라Ⅱ그룹 전문가회의
참가 결과 보고

On The Measurement of Non-Financial Assets
Fourth Meeting, 1-3 September 2004, London, UK

2004. 9

경 제 통 계 국
통 계 분 석 과

I. 출장개요

1. 출장자

- 통계분석과 행정사무관 이 정 민
- 통계분석과 통계주사 정 동 욱

2. 출장목적

- 비금융자산 추계관련 4차 CANBERRA II GROUP 전문가회의 참가

3. 출장기간 : 2004. 8. 30 ~ 9. 5

4. 출장지역 : 영국 런던

II. 제4차 캔베라 II 그룹 전문가회의 개요

1. 회의목적

- 국민계정에서의 비금융자산의 분류 재정립 및 측정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 협력 및 토의
- 리스, 라이선스, 연구개발비 등의 자본화를 위한 자산의 정의, 포괄범위, 고정자본소모, 기업회계와의 연계 등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 및 결정

2. 회의주관 : 영국 통계청(ONS)

의장 : Peter Harper (호주통계청)

3. 회의장소 : Victoria Plaza Hotel(런던) 회의장

○ 참가인원 : 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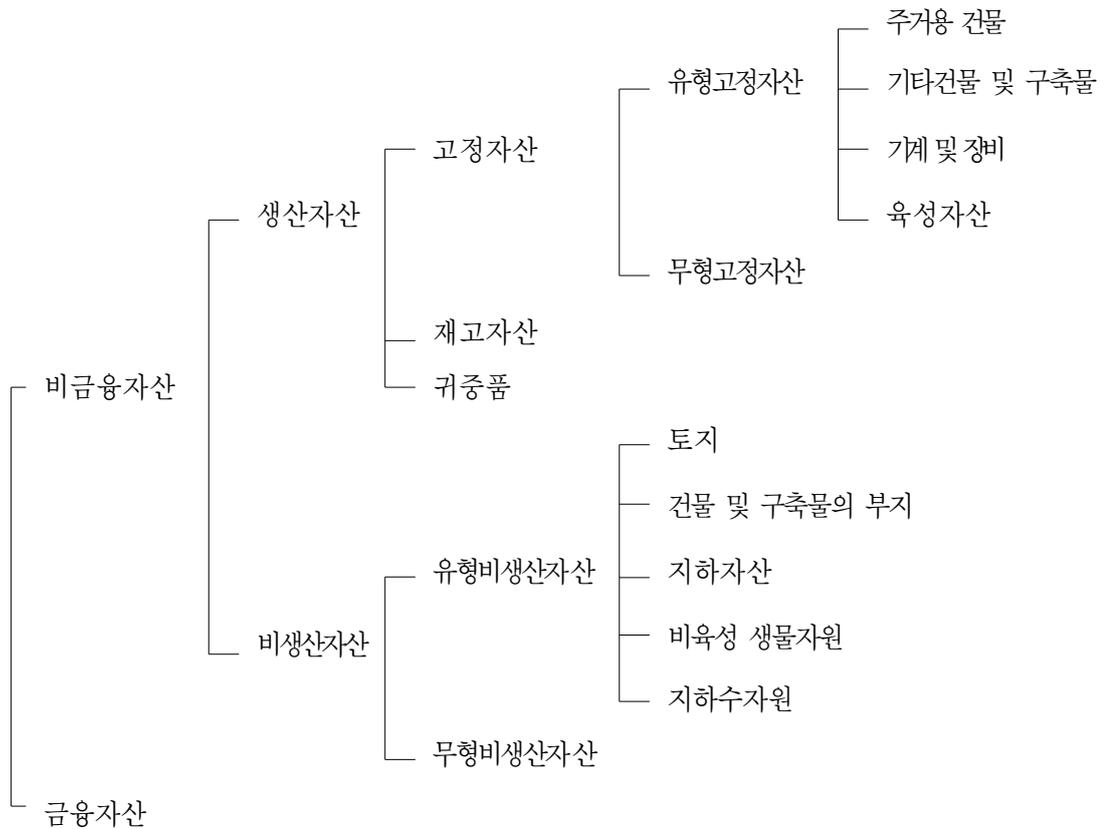
ONS(10명) OECD(7명) 네덜란드(3명) BEA(2명) IMF(2명) 대한민국(2명) 등

Ⅲ 주요 토의내용

1. 자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 Anne Harrison은 2004년 봄 회의에서 자산을 현행 93SNA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현행 SNA 자산분류 체계>



<자산분류표 (Anne Harrison 제안)>

		임대료 창출 여부	
		YES	NO
생산되었는지 여부	YES	- 고정자산 - 재고자산	- 귀중품
	NO	- 자연자산	- 법적계약

○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음

- 1) 자산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하였음
- 2) 자산을 형태에 따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는 것은 기능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반대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음
- 3) 임대료 창출여부는 자산 분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자산을 분류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4) 무형고정자산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적재산권」으로 바꾸는 것은 더 논의하기로 함
- 5) 재고자산을 재공품과 완제품으로 나누는 현행 방식에는 동의하였고 건설중인 자산중 일부 자산은 재공품보다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더 논의하기로 함
- 6) 유형비생산자산을 「자연자산」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였음
- 7) 무형비생산자산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적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포괄범위의 문제상 더 논의하기로 함
- 8) 어류 자원을 자산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더 논의하기로 함
- 9) 소유권 이전비용은 토지개량과 관련된 부분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함

2. 영업권과 기타 비생산자산

- 영업권 측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여러 방안 중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2가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통계국은 방안 2 채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 「**방안 2**」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특정기업의 인식 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그 순자산을 초과하는 구매가격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

3. 수자원

- Anne Harrison은 자연수에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음.
- 참가자는 Anne Harrison의 의견이 수자원 처리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자산의 재분류 관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 반대의 의견은 없었으나 2004년 9월말까지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Anne Harrison에게 보내도록 결정함.
- Anne Harrison은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다면 수자원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함

4. 리스와 라이선스

- 93SNA에서는 기계·장비의 기대수명보다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면 운용리스로 보아 생산활동으로 처리하는 반면, 기계·장비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소유권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수익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생산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음
- 최근에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걸쳐있는 새로운 종류의 리스가 출현함에 따라 Peter Harper가 제기한 자산의 분류 및 분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새로운 종류의 리스 : BOOT schemes(Buy/Own/Operate/Transfer)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시장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리스계약
- 1)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는 93SNA기준에 만족하는가?
 - ☞ 대다수는 만족하였음
- 2) 하나의 자산을 일부는 금융리스로 나머지는 운용리스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가?
 -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눌 수 있다는데 동의함.

국제회계기준 작성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나누도록 장래에 권고할 예정임.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함

3) 자유시장하에서 리스 시장가격이 계약상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일부는 실제로 판매가 되어 실현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른 참가자는 잠재적으로 실현가능하다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 양자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를하기로 함

4) 임대료의 시장가격은 무엇인가?

☞ 계약이 공정한 시장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계약상의 가격이 시장가격이라는데 동의함

5. 정부소유자산

- Anne Harrison과 Charles Aspden은 다음 회의 때까지 정부자산의 유지비용을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보고서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론적인 논거와 실제 적용에 필요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6. Buy/Own/Operate/Transfer(BOOT) 체계

- 민간이 건설해서 소유한 채로 운영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의 자산은 현재의 회계기준하에서는 민간이든 정부든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하기로 함.

- 참석자들은 유럽통계위원회의 권고사항과 John Pitzer의 제안에 대한 선호도를 John Pitzer에게 알려주기로 함.

7. 연구개발

- 참가자들은 2004년 말까지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주요 거시 경제 이용자들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결정하였음
-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함

IV 회의주제 및 일정

□ 2004. 9. 1(수)

1. 자산분류와 용어체계 재정립
 -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현안도 포함하여 논의
 - 2003년 10월 미팅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발표
2. 영업권과 기타 비생산자산 평가에 관한 논의
3. 리스와 라이선스
 - rent/rental 과 sale의 경계구분
 - 계약과 리스처리
 - SNA에서 시장가격 개념에 대한 재검토
 - 리스 방안별 통계표

□ 2004. 9. 2(목)

4. 정부소유자산
 - 민간소유자산에서의 총고정자본형성과 고정자본소모와의 일치에 관한 토의
5. Buy/Own/Operate/Transfer(BOOT)체계
6. R&D의 자본화
 -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방안에 대한 이용자 조사보고서
 - "제품개발"과 "R&D"의 구분
 - 자본과 기술측정

- R&D 자본화와 FM¹⁾부터 SNA까지 연결표 test에 관한 시범수행 국가의 과정 및 결과 보고서
 - 네덜란드의 R&D자본화 결과
 - 미국자료 수정
 - 영국자료 수정

□ **2004. 9. 3(금)**

7. 진부화/감가상각 측정방법
8. 생산계정에서 자본서비스 비용 측정방법
 -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 측정에 관한 논의
9. 소유권 이전비용
 - 비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 처리방법
 - 처분과 소유권 이전비용에 관한 논의

1) Frascati Manual (FM)